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4. 8.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61호로 2024년 5월 31일 전승관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녀의 양육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양육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별첨1]

다. 입법예고(2024. 6. 3.~ 6. 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자녀의 양육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양육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 받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지원대상)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1년 전 부터 계속 거주하며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부모 외에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해당 친권자가 지원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예산을 고려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지원기준)에서는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7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부칙 안 제1조(시행일)에서는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 부칙 안 제2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함.

○ 검토결과

-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고용률은 69.2%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률은 36.1%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국가구 483만원인 반면, 장애인 가구는 306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과 비교하여 63.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 가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어려운 실정임. 더욱이 장애인의 경우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비장애인 가정에 비해 양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실태조사의 다른 내용으로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장'이 43.9%로 가장 높은 통계 수치를 나타내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이 당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임을 알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4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임.
- 한편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업 협의 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협의 기준에는 문제가 없지만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와의 중복 지원은 적절치 못하므로 2세 이후의 일반 양육 수당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의견으로 수신함.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자녀의 나이가 7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지속적으로 양육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출산지원비는 출산 시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함. 그러나 급격히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집행부가 해당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복지원 등의 문제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자치구	조례명
1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2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3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4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검토결과	협의원료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 -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와의 중복 지원은 적절하지 못함. 2세 이후의 일반 양육 수당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업 목적에 맞는 용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사업 관리 필요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관련 지원 사업

사업명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재원	국비 45%, 시비 27.5%, 구비 27.5%		국비 45%, 시비 27.5%, 구비 27.5%	
지원 대상	출생아		2세미만 아동	
지원금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	현금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사업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울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근거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재원	국비 50% 시비 50%	시비 100%	구비 100%
지원 대상	등록 여성 장애인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국/시비 대상자 중복지원)
지원금	120만원	120만원	50만원

참고 자료

1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 7. 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24. 2. 13.>

⑨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2021. 7. 27., 2024. 2. 13.>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